#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기간제 근로자(연구원)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2025년도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장

## 1. 최종합격자

직 종	채용분야	응시번호	성명	휴대폰 뒷자리
기간제 근로자	연구원(3.10.)	07	정○○	5146
기간제 근로자	연구원(3.17.)	03	0 00	0405

<sup>\*</sup>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채용계약 체결 후 퇴직 발생 시 예비 합격자를 선발 함.

- 2. 임용일: 2025. 3. 10.(월) 또는 3. 17.(월) / 예정
  - \*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
- 3.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  - 가. 제출기한: 2025. 3. 10.(월)까지, 3. 12.(수)까지
  - 나. 제출서류
    - ①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확인서(건강검진 대체 통보서) 1부
      - \*(경로) '국민건강보험'홈페이지 → 건강in → 나의건강관리 → 건강검진정보 →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(직장제출용)
    -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(붙임1)
    -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    - ④ 최종학력증명서
    - ⑤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(불임2)
    - 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(붙임3)
      - \* 하단 동의자 이름, 서명 모두 자필 작성 요망
    - ⑦ 반명함판(3×4cm) 사진 이미지 파일(jpg)

- ⑧ 경력증명서(원본) 각 1부
- ⑨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- ⑩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
- 다. 접 수 처: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채용 담당자 앞
  - 주소: (03045)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

## 4. 공지사항

- 가.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나. 신원조회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 결과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,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 제한명령을 받은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🏗 02)3701-76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  - 2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.
  - 3.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. 끝.

#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- 1. 이용기관 명칭 :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
- 2. 이용사무(이용목적): 근로계약 및 인사업무
- 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·초본		

- 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  - ( 주민등록 □여권 □외국인등록 □운전면허) 번호 :

#### 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-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 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: 전화번호:

##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<u>공공</u>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<u>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</u>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## 〈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〉

1. <u><b>공직자</b></u>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	
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	해당 🗌
「국가공무원법」및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	비해당 □
자격・임용・교육훈련・복무・보수・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	
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<u>부패행위</u> '로 적발된 사실이	
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	
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	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	
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	해당 🗌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・관리・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	비해당 🗆
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	, •
손해를 가하는 행위	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	
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	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・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🗌
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 된 사실이 있는지	
2.2. 이 팀지에/다여티지 . 코먼 . 케이에/근보다 티네에 건코다기 어어느기	비해당 □ 해당 □
3-2. 위 <b>퇴직일</b> 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	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비해당 □ 해당 □
4-1. 해당 부패행위로 <b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b>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
	비해당 🗌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	해당 🗌
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	비해당 🗌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	해당 🗌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비해당 🗌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_	해당 🗌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🗌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년월일생년월일. . . 지원자(서명)

년 월 일

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] <개정 2022. 3. 14.>

(앞쪽)

##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
	성 명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
대상자	
	연락처(휴대전화 등)

본인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취업자등으로서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**동의자** (서명 또는 인)

**종로 경찰서장** 귀하

### 유의사항

- 1. 개인정보 수집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)
- 2.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: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: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,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- 4.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